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0
----------	-----

2019. 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29. 김종무 의원외 10명
2. 회부일자 : 2019. 4. 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4. 22.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무 의원)

1. 제안이유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을 명시함(안 제6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7조 및 8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명시함(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조례안의 제안배경

- 김종무 의원이 2019.3.29. 대표 발의한 이 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층주거지”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 둘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

립 및 변경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셋째,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기준과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급지역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넷째,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섯째, 생활기반시설 공급 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조례안의 의의

- 이 제정조례안은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여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거점시설 조성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의 한계를 보완하여 10분 동네¹⁾ 단위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 '10분 동네'란 모든 주민이 자기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서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공간을 의미함(서울연구원,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대상 선정계획안, 2019. 3, p. 6).

- 제정안의 특징은 도시의 팽창·성장 시기에 통용되던 주요 기반시설의 범위와 설치수준을 변화된 시대흐름과 다양한 수요변화에 맞추되, 저층주거지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시설별 공급 최저기준과 공급 지역의 선정방법 등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8.8.27)한 「지역밀착형 생활SOC²⁾ 확충방안」³⁾과 금년 4월 15일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2)」의 내용⁴⁾, 그리고 서울시(도시재생실)가 금년부터 “저층주거지내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⁵⁾”을

2)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함(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정부는 생활SOC에 대한 2019년도 투자규모를 '18년(5.8조원) 대비 약 50%(+2.8조원) 증가한 8.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 SOC 협의회’ 및 관계부처합동 ‘생활 SOC 추진단’ 설치

▲ 국무조정실은 중점투자시설 목록 선정 중

- 보편적 필요, 이용 빈도, 복합화 용이성, 안전확보 등 선정기준 제시

- 생활문화, 도서관, 체육, 의료, 어린이집, 주차장, 도시공원 등 19개 항목

※ 국토부는 뉴딜사업에 생활SOC공급계획 추진

4)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2)」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포함시 48조원)를 투자하여 문화·체육시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안전 및 생활환경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5)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5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분 도보권내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9.5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주요 내용 검토사항

가. 사업대상지(안 제1조)

-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된 「지역밀착형 생활SOC확충」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에서는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민선7기내 서울시 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⁶⁾(강남3구 제외) 중 소외·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개소를 대상으로, 「2030 생활권계획」을 통해 제시된 우선 확충대상 232개의 생활서비스시설⁷⁾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타 부서과의 업무 중복과 공급시설 및 공급지역의 중복 방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대상지를 “저층주거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안 제2조)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

6) 강남 3구 지역생활권을 비롯한 종로구, 중구 지역생활권 50여개는 민선 7기 이후 추진 예정

7) 생활서비스시설(2030생활권계획) : 도보권 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밀착형 생활SOC

소년특화시설)과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주차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음.

생활기반시설		정의 또는 시설 종류	근거법
도서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병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 -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별표7
청소년 및 아동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7호 및 제8호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공원		- 공간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생활기반시설	정의 또는 시설 종류	근거법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주차장법

-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⁸⁾을 개정(‘19.1)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11개)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7개)로 구분하여 서비스 수요인구와 접근성 등에 따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붙임 1,2 참조).⁹⁾

국토부 기준					서울시 기준 생활기반시설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미포함
		초등학교	-	10~15분	미포함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포함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포함
		마을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8)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방향과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9)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 및 공공의 민간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로 정의하였음. 마을단위시설은 도보로 10분, 거점시설은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민간시설도 포함하여 최저기준으로 마련하였음.

국토부 기준					서울시 기준 생활기반시설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의료	기초의료 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미포함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 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포 함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포 함	
	생활 편의	주거편의 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미포함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포 함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	
	돌봄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일부포함	
	의료	보건소	-	-	20분	-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	30분	-
	문화	공공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	
	체육	공공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일부 포함	
	휴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	10분	-

※ 서울시 시설별 최저기준은 생활기본계획 공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할 예정임.

※ 국토부 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2(p.44) 참조

-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는 국토부의 마을단위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거점시설 일부(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를 포괄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기준과 서울의 시설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경제·사회적 특성, 그리고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지역생활서비스시설¹⁰⁾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해됨¹¹⁾.

-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공원(도시공원법)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쌈지공원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의 범위에는 노인쉼터,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을단위의 소규모 필요시설의 공급이 어려워 생활기반시설의 도보생활권내 공급이라는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생활기반시설의 범위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과 ‘2030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의 인용 없이 정하되, 세부시설을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설의 범위 설정과 시설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10) 생활권계획에서는 생활서비스시설을 ‘권역생활서비스시설’과 ‘지역생활서비스시설’로 구분함. 권역생활서비스시설은 이용인구 10만인 단위 수준의 시설로서, 공공부문에서 주로 공급하는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하며,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은 지역주민의 도보권 내에 일상생활 편의시설로서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말함.

11) 생활편의시설 중 주민편의시설(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개별사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2030 생활권계획과 10분 동네 생활SOC 등 비교

(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시설') 서울시 전역 대상, 지역생활권별 (3개 내외 행정동)

- 7개 우선공급대상 시설 제시

(‘10분 동네 생활SOC’) 기초생활권 단위(1개 행정동) 정도의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 지역별 생활SOC 공급 및 수요량 분석 후 부족시설 확충

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2030 생활권계획)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 시설
10분동네 생활SOC 예시	쌈지공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노인정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놀이방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생활체육관
10분동네 프로젝트 (사회서비스시설)	공원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	보육시설	생활체육 시설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조)

-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적합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생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본계획 포함 사항 (안 제4조제2항)

1.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 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최저기준)을 마련
토록 한 것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에 따라 마을 및 거점단위시설 18개 시설을 분석¹²⁾(붙임 3
참조)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생활인프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에 적합
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공급지역 선정방법 및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
하도록 한 이 조례안 제6조제4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적 운영 예정인 공급지역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
법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안 제6조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것이
므로,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또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기
준을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전
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한데 비추어 볼 때, 이

12) 인구 5명이상 거주단위(200x200m)를 전국으로 구분하고 각 셀과 시설별 접근거리로 과부족
을 분석하였으나, 해당지역의 필요수요, 접근시설의 수용용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음

생활기반시설 공급계획은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도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30 생활권계획에서 이미 생활권별 생활기반시설의 현황 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지역생활권별로 우선 확충대상시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생활권계획의 분석자료 등을 참조·반영하여 저층주거지내 공급시설 및 지역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안 제6조)

-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공급지역으로 선정¹³⁾하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등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와 서울시 정책사업 및 규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의 제고,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 업무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3) * 국토교통부의 선정기준 : ①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② 인구 집중 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 가시화 가능 사업

③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 다만, 제1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 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제2항의 우선 선정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공급지역 선정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또한,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지역별 필요시설,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지역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확보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 종합

- 이 제정안은 도시재생실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음.
- 제정안의 취지대로 생활기반시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생활SOC 공급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또는 추진 예정에 있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등 각 부서간 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추진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각 부서별 업무 범위를 정하고, 공급지역 선정과 필요시설 결정, 시설의 적정규모, 예산지원 방법 및 기준, 예산확보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50
----------	--------

제안일자 : 2019. 04. 22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생활기반시설의 범위 설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생활기반시설 공급 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으로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로 조정하고(안 제2조제2호),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안 제1조,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생활밀착형”을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별 생활기반시설”을 “생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정에”를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기반시설”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로 하며, 안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 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중 “생활기반시설”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u>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u>저층주거지내 생활</u> <u>밀착형</u> _____ _____.</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u>”(이하 “<u>생활기반시설</u>”이라 한다)이란 학 습, 돌봄, 체육, 휴식, 교통 등 분 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u>도서관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도서관</u></p> <p>나. 「<u>영유아보육법</u>」 제2조제3호 에 따른 <u>어린이집</u></p> <p>다. 「<u>노인복지법</u>」 제31조제3호 에 따른 <u>노인여가복지시설</u></p> <p>라. 「<u>청소년활동 진흥법</u>」 제10 조제1호에 따른 <u>청소년수련시설</u></p>	<p>제2조(정의) _____ _____.</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u>”(이하 “<u>생활기반시설</u>”이라 한다)이란 일 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 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 서 <u>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u>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u></p> <p><u>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u></p> <p><u>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u></p> <p><u>사.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u></p> <p><u>아.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p>3.~4. (생략)</p>	<p>3.~4.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u></p> <p>2. ~ 4. (생략)</p> <p>5. <u>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u></p>	<p>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p> <p>1. <u>생활기반시설</u> ----- -----</p> <p>2. ~ 4. (제정안과 같음)</p> <p>5. ----- <u>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u> -----</p>

제 정 안	수 정 안
<p>6. ~ 8.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p> <p>① 시장은 <u>생활기반시설</u>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6. ~ 8. (제정안과 같음)</p> <p>③ ~ ⑤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p> <p>----- <u>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u></p> <p>-----</p> <p>-----</p> <p>-----</p> <p>-----</p> <p>-----</p> <p>-----</p> <p>1. -----</p> <p>-----</p> <p>2. -----</p> <p>-----</p> <p>-----</p>
<p>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p> <p>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p> <p>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시장은 <u>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생활기</u></p> <p><u>반시설</u>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저층주</u></p> <p><u>거지내 생활기반시설</u> -----</p> <p>-----</p> <p>-----</p> <p>-----</p>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 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 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기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